



1 관세 변화

무역법 제122조 임시 수입 관세(Temporary Import Surcharge) 추가 적용 유지

1) 시기: 2월 24일부터 150일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7월 24일 오전 12시 1분까지)¹

2) 대상: 전품목에 10% 임시 수입 관세 부과

예외: 에너지, 의약품, 특정 농산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등

3) 누적 여부: 무역법 122조 임시 수입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

→ FTA가 활용되는 품목의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중국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ex)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 10% [중국, 일본] 최혜국대우(MFN) 세율 + 10%

국가	기본 관세	IEEPA 관세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
한국	MFN/FTA	기본 관세 포함 15% ² (상호관세)	기본 관세 + 10%
일본	MFN	기본 관세 포함 15% (상호관세)	
중국	MFN	20% 10%(마약관세)+10%(상호관세)	

4) 소송 경과

- 2026.5.7. 국제무역법원(CIT) 1심 위법 판결 선고
 - 무역법 제122조의 요건인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와 구별됨
 - 워싱턴주와 두 개 민간기업 원고에 한정하여 관세 징수 중단 및 환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편적 금지명령은 아님
- 2026.5.13.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1심 판결 효력 임시 집행정지(temporary stay) 결정
 -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무역법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 유지
-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거나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환급 동향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진행 본격화

1) 국제무역법원(CIT)의 조치

- 2026.3.4.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한 정산을 명령
- 2026.3.20. 브라질 및 인도에 부과된 IEEPA 관세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
- 2026.3.27. 환급 대상 범위를 최종 확정된 정산 건까지 확대

1 2월 24일 오전 12시 1분 이전 선적되고 2월 28일 오전 12시 1분 이전 통관을 완료한 물품은 제외

2 기본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 대신 해당 관세율로 부과함

2)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치

- 2026.3.6. 미국 전자통관시스템(ACE)* 포털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 약 45일 내 구축 계획 제시
 - * ACE: 자동화 상업환경 시스템.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 * CAPE: 통합 수입 신고 관리 및 처리 시스템.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 2026.3.19. CAPE 모듈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45%~80% 수준으로 보고
- 2026.3.31. CAPE 모듈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60%~85% 수준으로 보고
- 2026.4.20. 미국 전자통관시스템(ACE) 포털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 1단계 시행
 - 미정산 및 정산 후 80일 이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업자(IOR) 또는 권한 있는 통관대리인이 일괄 제출
 - 일괄 처리 및 세액 재산정을 거쳐 60일~90일 내 차액과 이자 환급 예정
- 2026.5.4. ACE 보고서를 통해 CAPE 환급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을 공지
 - 전자계좌이체(ACH)* 방식으로 2026.5.12.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음
 - *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 2026.5.26. 약 206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보고

3 301조 조사 현황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추진

-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조사를 신속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무역법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 종료 후 후속 관세조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구분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관련	강제노동 관련
조사 대상	한국 포함 16개 무역상대국 ³	한국 포함 60개 무역상대국 ⁴
조사 내용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국내외 수요와 무관한 과잉 생산능력 형성 여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도입 및 집행 여부
진행 경과	3.11. 조사 개시 4.15. 공개 의견 제출 마감 5.5.~5.8. 공청회 개최 5.20. 반박 의견서 제출 마감	3.12. 조사 개시 4.15. 공개 의견 제출 마감 4.28.~5.1. 공청회 개최 5.8. 반박 의견서 제출 마감
한국 정부 제출 의견	- 한국 제조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과잉생산 구조가 아니라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 기반 구조임을 강조 - 기업 구조조정 제도, 철강 부문 국제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국제적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	국내법,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조항 등을 통해 강제노동 방지 체계 구축

출처: 연방관보에 게시된 미국 무역대표부 공지를 정리하여 연구자 작성

3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4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1)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회피 조사⁵

날짜	대상 품목	내용
2.26.	잔탄검 (사건번호: 8144)	- 미국 수입자들이 중국 공급자로부터 잔탄검을 수입하면서 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 - 과세가격 산정상 진정한 매매(bona fide sale)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중국산 잔탄검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반덤핑관세 회피로 최종 판정
3.16.	강관류 (사건번호: 8164)	- 미국 수입자들이 중국산 강관류를 태국 업체 명의로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신고하거나 일부 물품을 드릴 파이프를 허위 분류 - 태국 내 공정이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제철자료의 신뢰성도 훼손되었다고 보아, 중국산 강관류에 부과 중인 반덤핑·상계관세 회피로 최종 판정
4.8.	견인식 잔디관리기 (사건번호: 8150)	- 중국산 견인식 잔디관리기를 잔디청소기·퇴비살포기 등으로 기재하고, 반덤핑관세 명령 대상임에도 일반 수입으로 신고 - 정보제출요청서(RFI)에 응답하지 않아 불리한 추정을 적용하여, 허위 품목분류·저가신고·반덤핑관세 대상 미신고에 따른 반덤핑관세 회피로 최종 판정
5.4.	침엽수 목재 (사건번호: 8199)	-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를 뉴질랜드에서 건조·절단·샌딩 등 추가 가공한 후 원산지를 뉴질랜드산으로 신고하여 미국에 수입 - 뉴질랜드 내 공정이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를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의 가공이 아니라고 보아 반덤핑·상계관세 회피로 최종 판정
5.18.	철도화차 연결기 (사건번호: 8183)	- 멕시코에서 제조된 화차에 멕시코산 또는 중국산 철도화차 연결기(FRC)를 부착한 상태로 반입하며 해당 연결기에 대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음 - 화차에 부착된 연결기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적용대상이므로, 연결기에 대한 정식 수입신고 누락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회피로 최종 판정

출처: 미국 CBP 공고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상무부(DOC)의 우회조사⁶

날짜	대상 품목	내용
2.3.	원형용접 탄소강관(CWP)	- 중국산 열연강재(HRS)를 오만에서 원형용접 탄소강관(CWP)으로 완성 - 오만 내 추가 가공을 통해 CWP로 완성된 물품이 중국산 CWP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한다고 보아, 반덤핑·상계관세 우회로 최종 긍정 판정
2.23.	산성 하이드록시에틸리덴 디포스폰산(HEDP)	- 중국산 산성 HEDP를 액상이 아닌 고체 또는 분말 형태로 미국에 수출 - 중국산 수용성 산성 HEDP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형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덤핑·상계관세 우회로 최종 긍정 판정
2.27.	유정용 강관(OCTG)	- 중국산 철강 빌릿을 태국에서 무게목 유정용 강관(OCTG)으로 완성 - 태국 내 추가 가공을 통해 OCTG로 완성된 물품이 중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한다고 보아, 반덤핑·상계관세 우회로 최종 긍정 판정
3.25.	표준 강제 용접 철망	- 멕시코산 저탄소강(LCS) 와이어를 미국에서 표준 강제 용접 철망으로 완성 - 미국 내 추가 가공을 통해 완성된 철망이 멕시코산 표준 강제 용접 철망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한다고 보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우회로 최종 긍정 판정

*단, 일부 생산자(Impulsora)인 LCS 와이어는 우회 대상에서 제외

출처: 연방관보에 게시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공고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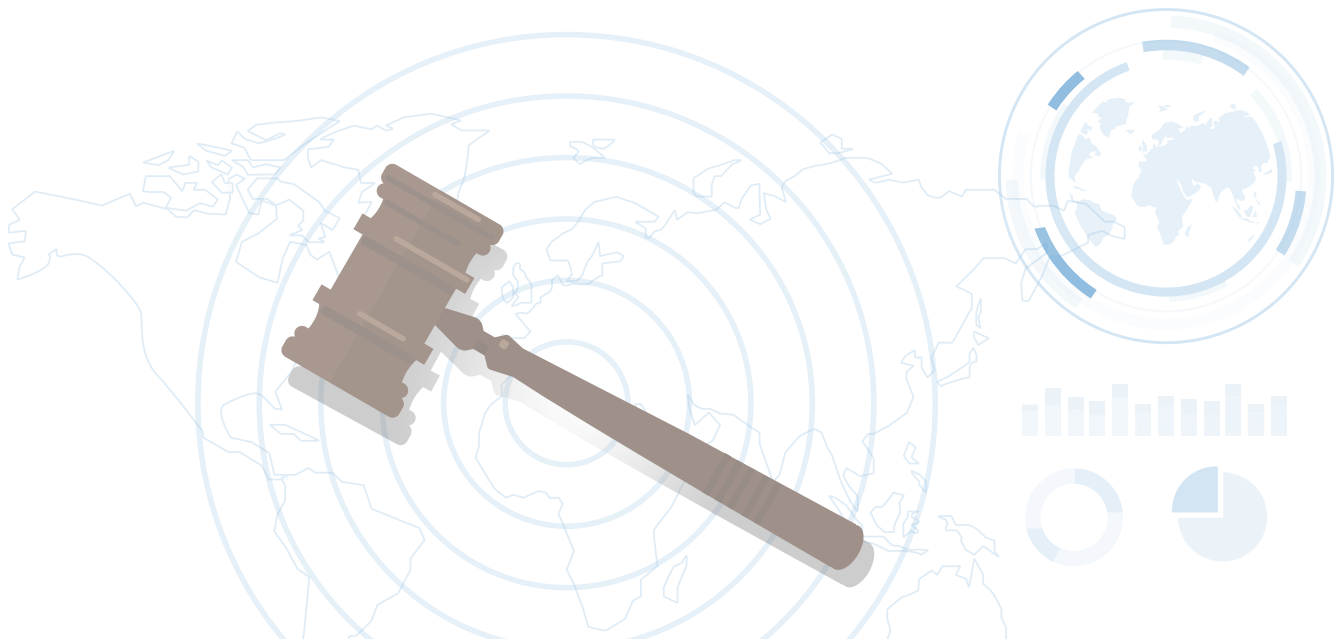
5 CBP가 집행 및 보호법(EAPA)에 따라 회피 결정을 통지한 공개 사례 중 최종적으로 관세회피가 인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함(2026.1.1.~2026.5.20.)

6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적용을 우회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 공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함(2026.1.1.~2026.5.20.)

주요기관의 원산지 위반 관련 조사 특징 비교

구분	상무부 우회 조사	관세국경보호청 회피 조사
공식 용어	우회(Circumvention) 조사	집행 및 보호법(EAPA) 회피(Evasion) 조사 (기존 무역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위)
주요 내용	명령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명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조사 개시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 청원	이해관계자 신고 또는 타 기관 요청
주요 유형	제3국 조립·완성, 경미한 변경, 후속 개발 물품 등	허위 원산지 표시, 과세가격 저가신고, 송장 위조 등
조사 절차	①개시(30일) ➔ ②예비(150일) ➔ ③최종(300일) (예비판정 최대 90일, 최종 판정 최대 65일 연장 가능) ※서면질의서 및 공청회 ➔ 법리 중심	①개시(15일) ➔ ②임시(중간)조치(90일) ➔ ③최종(300일) (최종판정 최대 60일 연장 가능) ※수입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행정 중심
판정 기준	물품 동일성, 생산 공정의 경미성, 무역 패턴의 변화 등	수입 신고 내용의 진위, 원산지 세탁 여부
조치 결과	명령의 범위 확대 (단, 인증 요건 충족 시 관세 부과 면제 가능)	특정 수입 건에 대한 회피 결정, 관세 추징 및 제재
특이사항	반덤핑 · 상계관세 명령 적용 범위(scope) 해석 권한 보유	통관 단계의 조사·집행 중심 (범위 해석 권한 없음)

* 범위판정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여 특정 제품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함





2026년 미국의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²⁾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무역법 제122조 전면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통상법 제301조 ³⁾	기본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¹⁾	한국·유럽연합(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25~100% (전기차)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① 완성차 조건 : 상무부 승인 대상 : 비미국산부품만 25% ② 자동차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부품만 25% ② 자동차부품 0%				
	USMCA 미총족	25%		25%				
철강·알루미늄·구리 중심 (부속서 1-A)	중국	50%		50%	품목별 관세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25%		25%				
	그 외 국가	50%		5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B)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25%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15%		15%				
	그 외 국가	25%		25%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3) ⁵⁾	중국	15%		15%	품목별 관세	7.5% or 25%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러시아·벨라루스·쿠바·북한	25%		25%				
	그 외 국가	15%		15%				
반도체 및 파생상품 ⁶⁾	한국·EU·일본	25%		25%	품목별 관세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베트남							
	캐나다·멕시코							
	USMCA 미총족							
그 외 제품 ⁷⁾	한국·EU·일본		10%	10%	전면 관세	7.5%~100%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10%				
	베트남							
	캐나다·멕시코			0%				
	USMCA 미총족		10%	10%				

1) 한국은 EU·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기본세율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버스 및 기타 차량 (제8702호: 운전자 포함 1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 미국 주석 38(c) 열거품목)에는 10%가 적용되고, 중대형차량(제8701·8704·8705·8706·8709호, 미국주석 38(b) 열거 품목)에는 25%가 적용됨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부과가 되지 않음. 단, 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301조와 반덤핑·상계관세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25%), 광물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4) 제122조 임시 수입 추가세는 기본 세율(MFN) 또는 FTA 세율에 추가되어 부과됨

5) 포고령 제11021호.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6)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 제8471.50호·제8471.80호·제8473.30호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반도체에만 적용됨

7) 의약품의 경우 포고령 제11020호 부속서 3의 회사에는 7월 31일 이후, 그 외는 9월 29일 이후 100%, 한국은 협정에 따라 15%가 적용될 예정임
목재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EU·일본은 10% 또는 15%, 그 외는 10% 또는 25%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8)과 같음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연목	10%	10%	무역협정 완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가구			
목재가구	25%	30%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날짜	내용	출처
1.14.	- 1월 15일부터 부속서에 명시된 기술요건 충족하는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서의 사용 · 연구개발 등 제외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 조정 백악관
1.29.	-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 마련	쿠바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승인	이란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이행 등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추가 관세 철폐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관세 조정 백악관
2.6.	-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18% 상호관세를 적용, 인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인하 등 잠정 합의	미국-인도 공동 성명 백악관
2.9.	- 미국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19% 상호관세를 적용,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시장접근 확대 등 합의	미국-방글라데시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공동성명 백악관
2.12.	- 미국은 북마케도니아산 상품에 15% 상호관세를 유지, 북마케도니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철폐 등 합의	미국-북마케도니아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틀에 관한 공동 성명 백악관
2.19.	-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상호관세를 유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합의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 최종 확정 백악관
2.20.	-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 · 마약관세 등이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Learning Resources, Inc., et al. v.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No. 24-1287) 미국 연방대법원
2.20.	- 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특정 관세 조치 종료 백악관
2.20.	-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백악관
2.20.	-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중단 조치 지속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 중단 지속 백악관

3.4.	-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재정산하도록 명령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5.	- 미국 24개 주는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시 수입 추가세의 무효 확인 및 집행 금지를 청구	State of Oregon et al. v. Trump et al. (No. 26-01472) 미국 국제무역법원
3.6.	-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즉시 이행 불가 진술을 근거로 IEEPA 관세 환급 명령의 즉시 이행 부분을 유예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11.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관련 특정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부과 및 집행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개발 중인 자동화 상업 환경(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40~80% 수준으로 보고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2.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 100% 관세 적용 발표, 한국은 한-미 합의에 따라 15% 적용 예정 - 국내생산 이전 승인 기업, 제네릭 의약품 등 감면·예외 가능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백악관
4.2.	- 4월 6일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금속 함량 비율이 아닌 수입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50%, 25%, 15% 차등 관세를 적용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강철, 구리 수입 조정 조치 강화 백악관
4.6.	- IEEPA 관세 환급 대표 사건인 Atmus Filtration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취하에 따라 소송 종료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13.	- CBP는 4월 20일 자동화 상업 환경(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을 배포하고,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환급 신청 시 관세 차액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	CSMS #68340863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CAPE 기능 배포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6.	-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제301조 관세 조치에 대한 두 번째 4년 L 주기 검토를 개시	제2차 4년 주기 검토 개시: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법·정책·관행 미국 무역대표부
5.6.	- CBP는 제232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 관련 무관세 코드 신설 등 기술적 수정 사항을 공지	CSMS #68554727 -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세 기술적 수정 안내 관세국경보호청